

군인 사망보상금 청구 안내

■ 지급요건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유족에게 사망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지급대상: 유족

순직일 기준	유족 범위 및 급여를 받을 순위								
1948. 8. 15. ~ 1974. 6. 18.	<p>(범위)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로서 고인의 사망 당시 동일호적 내에 있는 자</p> <p>(순위) 상기에 계기한 순위에 의하며, 같은 순위 내에 있어서는 호주상속인은 기타의 자에, 남(男)은 여(女)에, 장(長)은 유(幼)에 앞섬</p> <p>< 관련 사례 ></p> <table border="1"> <thead> <tr> <th>유족</th> <th>급여 수급권자</th> </tr> </thead> <tbody> <tr> <td>형제만 있는 경우 (3남 2녀)</td> <td>형제 중 장남이 단독 청구함(장남이 사망하였을 경우 나이순으로 다음 남자 형제에게 급여 수급권이 발생하고, 남자 형제가 없는 경우 여자 형제의 나이순으로 급여 수급권 발생함)</td> </tr> <tr> <td>형제만 있고 형제 중 장남은 사망, 삼남은 고인 사망 전 분가 제적한 경우(3남 2녀, 고인은 차남)</td> <td>형제 중 삼남이 고인 사망 전 분가 제적하여 고인의 사망 당시 동일호적 내 없으므로 급여 수급권 없음. 다음 순위인 형제 중 장녀가 단독 청구함</td> </tr> </tbody> </table>	유족	급여 수급권자	형제만 있는 경우 (3남 2녀)	형제 중 장남이 단독 청구함(장남이 사망하였을 경우 나이순으로 다음 남자 형제에게 급여 수급권이 발생하고, 남자 형제가 없는 경우 여자 형제의 나이순으로 급여 수급권 발생함)	형제만 있고 형제 중 장남은 사망, 삼남은 고인 사망 전 분가 제적한 경우(3남 2녀, 고인은 차남)	형제 중 삼남이 고인 사망 전 분가 제적하여 고인의 사망 당시 동일호적 내 없으므로 급여 수급권 없음. 다음 순위인 형제 중 장녀가 단독 청구함		
유족	급여 수급권자								
형제만 있는 경우 (3남 2녀)	형제 중 장남이 단독 청구함(장남이 사망하였을 경우 나이순으로 다음 남자 형제에게 급여 수급권이 발생하고, 남자 형제가 없는 경우 여자 형제의 나이순으로 급여 수급권 발생함)								
형제만 있고 형제 중 장남은 사망, 삼남은 고인 사망 전 분가 제적한 경우(3남 2녀, 고인은 차남)	형제 중 삼남이 고인 사망 전 분가 제적하여 고인의 사망 당시 동일호적 내 없으므로 급여 수급권 없음. 다음 순위인 형제 중 장녀가 단독 청구함								
1974. 6. 19. ~ 현재	<p>(범위) 배우자, 자녀, 손자녀, 부모, 조부모</p> <p>(순위) ① 자녀, ② 손자녀, ③ 부모, ④ 조부모 순으로 배우자는 앞서 계기한 순위에 따른 우선순위 유족과 공동순위이며, 배우자 외 유족이 없는 경우엔 배우자를 우선순위로 함</p> <p>※ 고인의 미성년 자녀와 자녀의 친권자인 배우자가 급여를 받을 공동순위인 경우, 배우자 단독청구</p> <p>※ 자녀는 25세 미만인 자녀와 「군인 재해보상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상이연금의 등급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25세 이상인 자녀로 한정 (1974. 6. 19. ~ 2014. 10. 14. 18세 / 2014. 10. 15. ~ 2022. 2. 2. 19세 적용)</p> <p>※ 손자녀는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경우로 25세 미만인 손자녀 또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25세 이상인 손자녀로 한정 (1974. 6. 19. ~ 2014. 10. 14. 18세 / 2014. 10. 15. ~ 2022. 2. 3. 19세 적용)</p> <p>< 관련 사례 ></p> <table border="1"> <thead> <tr> <th>유족</th> <th>급여 수급권자</th> </tr> </thead> <tbody> <tr> <td>19세 미만의 자녀, 배우자 및 부모가 있는 경우</td> <td>자와 배우자가 공동 급여 수급권자가 되나, 자가 미성년이므로 배우자인 모가 친권자로서 법정대리인이 되어 배우자가 단독 청구함</td> </tr> <tr> <td>25세 이상의 자녀, 배우자, 부모, 조부모가 있는 경우</td> <td>배우자와 부모가 공동 급여 수급권자가 되며, 이들 중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대표자가 수급자가 되나 대표자가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자 자기지분에 대해 청구함</td> </tr> <tr> <td>부모만 있는 경우</td> <td>부모가 공동상속인이 되며 이들 중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대표자가 수급자가 되나 대표자가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자 자기지분에 대해서 청구함</td> </tr> </tbody> </table>	유족	급여 수급권자	19세 미만의 자녀, 배우자 및 부모가 있는 경우	자와 배우자가 공동 급여 수급권자가 되나, 자가 미성년이므로 배우자인 모가 친권자로서 법정대리인이 되어 배우자가 단독 청구함	25세 이상의 자녀, 배우자, 부모, 조부모가 있는 경우	배우자와 부모가 공동 급여 수급권자가 되며, 이들 중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대표자가 수급자가 되나 대표자가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자 자기지분에 대해 청구함	부모만 있는 경우	부모가 공동상속인이 되며 이들 중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대표자가 수급자가 되나 대표자가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자 자기지분에 대해서 청구함
유족	급여 수급권자								
19세 미만의 자녀, 배우자 및 부모가 있는 경우	자와 배우자가 공동 급여 수급권자가 되나, 자가 미성년이므로 배우자인 모가 친권자로서 법정대리인이 되어 배우자가 단독 청구함								
25세 이상의 자녀, 배우자, 부모, 조부모가 있는 경우	배우자와 부모가 공동 급여 수급권자가 되며, 이들 중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대표자가 수급자가 되나 대표자가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자 자기지분에 대해 청구함								
부모만 있는 경우	부모가 공동상속인이 되며 이들 중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대표자가 수급자가 되나 대표자가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자 자기지분에 대해서 청구함								

■ 접수기관: 국군재정관리단 (우편 / 방문) 또는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지청) (방문)

- * 우편: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우체국사서함 20호 군인사망보상금담당 / 우) 04386
- * 방문: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나무로4 국군재정관리단 행정안내실

■ 청구서류 * 모든 청구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순직일 기준	청구서류			
1948. 8. 15. ~ 2007. 12. 31.	① 사망보상금 청구서	② 청구인 기준 주민등록등본	③ 청구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④ 고인의 사망기록이 있는 제적등본
2008. 1. 1. ~ 현재	① ~ ③ 상 동		④ 고인 기준 기본증명서 (상세) 또는 사망진단서	⑤ 고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필요시 제출] 1974. 6. 19. ~ 현재	⑥ 유족 대표자 선정서, 위임자 신분증 사본		⑦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청구인 신분증 사본	

②: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동의서 위치: 청구서 뒤쪽 중앙)

⑥: 유족 중 급여를 받을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으로 그 같은 순위자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급여 수령을 위임한 경우(대표자를 선정하지 않는 경우, 같은 순위자별 청구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똑같이 나누어 지급됨)

⑦: 고인의 미성년 자녀와 자녀의 친권자인 배우자가 급여를 받을 공동순위로서 배우자가 단독청구하는 경우 또는 성년인 자녀가 유족 대표자에게 급여 수령을 위임하는 경우(가족관계증명서만 제출)

■ 지급기준

사망 당시 법령에 규정된 사망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 2024. 5. 1. ~ 2025. 4. 30. 기간 순직한 군인에게 적용되는 사망보상금 지급기준 >

사망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전 사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	331,200,000원
특수직무순직 (순직 I 형)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	248,400,000원
공무상 사망 (순직 II, III형)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	132,480,000원

★ 상기 내용은 2024년 5월 이후 순직하신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사망 당시 법령의 사망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액이 달리 결정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결정된 경우, 사망 당시 법령의 지급기준에 따른 사망보상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국방부 「순직 재분류자 등 군인사망보상금 지급지침」]

✓ 병 사망위로금을 수령한 경우, 사망보상금 지급액에서 병 사망위로금 수령분을 공제합니다.

[국방부 「군인복지기금 운용지침」]

✓ 국가배상금을 수령한 경우, 사망보상금 지급액에서 국가배상금 수령분 중 소극적 손해배상금 상당액을 공제합니다. [「군인 재해보상법」 제18조]

■ 시 효

고인의 사망 당시 법령에 규정된 시효 규정에 따라 급여를 받을 권리를 시효 기산일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급여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순직일 기준	시효 기준
1948. 8. 15. ~ 1955. 9. 1.	사망일(급여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군인사망급여금규정」)
1955. 9. 2. ~ 1974. 6. 18.	사망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5년(「군인사망급여금규정」)
1974. 6. 19. ~ 현재	사망일(급여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예산회계법」,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 ✓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결정된 경우, 순직 결정일로부터 5년을 시효로 합니다. (「군인 재해보상법」 제49조)
- ✓ 사망통지서 수령일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호적이나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사망 사실이 기록된 경우에는 그 이전에 사망 통지를 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국방부 「순직 재분류자 등 군인사망보상금 지급지침」)

■ 자주하는 질문

Q. 접수 후 지급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처리 기간은 약 3주~4주 소요되며, 심사종료 후 최기 지급일(매월 10일, 25일)에 지급됩니다.
Q. 청구인 본인이 지정한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 또는 현금으로 사망보상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A. 청구인 본인 명의 예금계좌로만 사망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군인 재해보상법」 제17조제1항,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10조)
Q. 방문해서 청구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는데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A. 국군재정관리단의 근무시간은 08:30 ~ 17:30입니다. 청구서류 제출 외 담당자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담당자 부재로 인한 재방문 등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방문 전 담당자에게 연락 후 방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 심사가 끝나면 청구인이 그 결과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심사가 종료되면 심사결과 통지서(처분서)를 청구서에 기재해주신 주소지로 서면 통지해 드리며, 지급 결정된 경우 사망보상금이 지급되기 전 청구인에게 지급일, 지급금액이 알림톡(카카오톡)으로 안내됩니다.

- 보다 상세한 내용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 퇴직급여과 (군인 사망보상금담당, ☎ 02-3146-6476)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1

사망보상금 청구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4일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택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 문자 수신 여부 [] 에 [] 아니요
	주소		
	급여 수령 금융회사명	계좌번호	
사망한 군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연월일	청구인과의 관계	
	사망 당시 계급·호봉	군번	
	사망보상금 지급 구분 [] 전사 [] 특수직무순직 [] 공무상 사망		
	제3자 가해사실 [] 있음 [] 없음	외국파견 기간 중 사망 여부 [] 외국근무 중 [] 국내근무 중	
	소속 부대		
	복무구분 [] 병역의무 [] 직업군인		
급여 제한 사유 [] 금고 이상의 형 확정 []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금 수령 [] 다른 법령에 따른 재해보상금 수령			

「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군재정관리단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	-------	-----------

청구인 첨부서류	1. 군인의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등본 * 담당공무원은 청구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청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유족등록을 마친 사람이 사망보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증서 사본의 제출로 주민등록표 등본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청구인의 주소란에는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적으십시오.
 2. 급여 수령 금융회사는 반드시 국내 은행 또는 국내에 지점이 있는 은행 등이어야 합니다.
 3. 청구인의 계좌번호란에는 실명확인통장의 계좌번호를 적으십시오.
 4. 사망한 군인의 급여 제한 사유란에는 해당하는 [] 안에 “√” 표시를 하십시오.
- ※ 청구인의 휴대전화번호는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을 수 있으나, 자택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으십시오.

처리절차



별지#2

[] 유족대표자 선정서
 [] 유족대표자 변경선정서
 [] 유족대표자 선정 해제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택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 문자 수신 여부 []에 [] 아니요
	주소	사망한 군인과의 관계	
	같은 순위 유족의 위임내용	[] 유족대표자 선정 [] 유족대표자 변경 (변경 사유:) [] 유족대표자 선정 해제 (해제 사유:)	
위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군재정관리단장 귀하

첨부서류	1.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람의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가.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 나.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 2. 유족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1. 대표자와 위임자의 주소란에는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적으십시오.
2. 대표자의 같은 순위 유족의 위임내용란의 [] 안에 "√" 표시를 하십시오.
3. 같은 순위 유족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하여 계속하여 적으십시오.
4. 위임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위임자의 성명란에 서명을 할 때에는 반드시 자필로 해야 합니다.

※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는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을 수 있으나, 자택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으십시오.

처리절차

